

2019
통 권 제12호

KOREAN NOTARIES ASSOCIATION



공증과 신뢰

주요회무

2019 공증과신회 (통권 제12호)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I. 공증법령 제·개정 의견 제시	5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15
III. 공증업무 지침·지시 등 회원 안내	33
IV. 협회 주요 활동	42
V. 2018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55
VI. 2018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64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18. 1. 1.~2018. 12. 31.)

I. 공증법령 제·개정 의견 제시

1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8. 2. 19.자)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을 위하여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며,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등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상법상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히 이사 지위에 있는 자보다도 그 법적 권한이 더 지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배인의 선임·해임을 결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 신설에 반대한다

다는 취지 등의 의견서를 2018. 2. 19.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8-19호(시행 2018. 2. 19.)〉

대한공증인협회는 2018. 1. 9.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제37조의3제2항에 관하여

- 개정령안 제37조의3제2항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관하여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2. 지배인의 선임·해임, 3. 명의개서 대리인의 설치·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및 제3호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사록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무릇 상법상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지배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히 이사 지위에 있는 자보다도 그 법적 권한이 더 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제38조의3제4항에 관하여

- 개정령안 제38조의3제4항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첫째, 위 규정이 만일 위임장의 작성명의인(위임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인 앞에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 동 규정은 “…… 그것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위 규정이 그 증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전자서명이 맞다는 것을 지정공증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전자서명”은 현행 전자서명 제도상으로는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경우 동 규정은 “…… 지정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3. 시제의 표현에 관하여

- 제4항 중 “대리인이 촉탁한 경우”는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로, 제6항 중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시제(時制)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②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 적용 배제의 허가 기준에 관한 의견 법무부 제시(2018. 3. 30.자)

- 법무부에서는 2018. 3. 23.(금) 유언공증 및 참석인증 시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허가 기준(안)으로, 독점 가능성, 징계·형사처벌 전력, 사건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사정, 지역의 공증 수요, 촉탁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기준을 마련, 이에 대한 협회 의견을 요청해 온 데 대하여, 협회는 동 허가 기준으로 공증인의 징계전력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적극 찬성하나 일부 실무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허가기준에 추가로 고등검찰청 관할 구역 안팎에 따른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8. 3. 30. 법무부에 제출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24호(시행 2018. 3. 30.)〉

제 목 :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 적용 배제의 허가 기준에 관한 의견

1. 귀 부 문서번호 법무과-3631(시행 2018. 3. 23, 협회 접수 2018. 3. 26.)과 관련입니다.

2.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 적용 배제 허가기준으로서 공증인의 징계전력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실무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징계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 검사장이 법무부에 징계전력을 조회하도록 제도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최근(가령,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무징계증명서(사본)를 제출

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인가공증인에 관한 징계전력을 공증담당변호사 별로 연계할 경우는 공증담당변호사만 바꾸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담당변호사가 허가신청을 할 경우는 인가공증인의 징계전력과 공증담당변호사로서의 징계전력을 공히 연계할 필요가 있음.

(3) 무징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경우, 그 발급신청과 발급은 팩스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또한 귀 부가 검토한 허가 기준에 추가로 고등검찰청 관할 구역 안팎에 따른 허가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바, 소속 지방검찰청과 출장지 관할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고등검찰청 관할 내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출장지 관할 검사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되, 출장지 관할 검사장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오니 귀 부가 마련하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 적용 배제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8. 7. 9.자)

□ 등기관이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부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서증서가 제출되고 있는 현 실무를 반영하여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공증인의 인증받은 서면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도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등의 의견서를 2018. 7. 9. 법원행정처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8-44호(시행 2018. 7. 9.)>

대한공증인협회는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개정안 제60조 제2항과 제4항에 관하여

가. 개정안 제60조 제2항 중 ‘위임’은 ‘수여’로 ‘수임인’은 ‘대리인’으로 고치는 것이 옳바르다고 봅니다.

나. 개정안 제60조 제4항은 ‘공정증서인 경우’를 ‘공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외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포함하는 의미로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개정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은 서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공증을 받은 서면’이라고 함은 한편으로는 공정증서는 제외되고 인증을 받은 서면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증서나 사서증서 인증서는 물론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서 나아가 확정일자를 받은 서면까지도 포함되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증을 받은 서면’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공정증서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다. 위 의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60조 제2항(신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u>위임한 경우에는 수입인</u> 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60조 제2항(신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u>수여한 경우에는 대리인</u> 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60조 제4항(현행 제3항)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u>공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u> 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정안 제60조 제4항(현행 제3항)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u>공정증서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u>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개정안 제61조 제3항과 제4항에 관하여

가. 현행 제61조 제3항은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재외국민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도 없는 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라고 정하였던 것을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을 받음으로써’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본국 공증인 이외에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공증만 허용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 개정안 제61조 제3항은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이란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공증으로서 이는 「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문 중 ‘직접’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반드시 필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만일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직접’이라는 표현 대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인증은 제외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외공관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① 당사자가 영사관 앞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나(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영사관 앞에서 그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입니다(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8조, 제26호 서식 및 제27호 서식 참조).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며(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국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둘째, 재외국민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는 그가 체류하는 지역의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셋째, 재외국민이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있는 동안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넷째, 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하며(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재외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하여 「재외공관공증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릅니다(재외공관공증법 제33조). 재외공관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국내 공증인의 인증은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재외공관의 공증 절차도 국내의 공증 절차와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①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②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합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공증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사후에는 사서증서인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9조, 제27조 내지 제33조, 제57조 제4항, 제65조 제2항).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서는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공증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리해석에 따르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은 공증인의 인증받은 서면으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도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위 의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61조 제3항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u>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u> 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정안 제61조 제3항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u>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하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u> 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제61조 제4항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u>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u>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을 받음으로써</u>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정안 제61조 제4항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대한민국의 <u>공증을 받음으로써</u>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1. 19.자)

-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 벌금형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더불어민주

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50호)에 대하여, 협회는 「공증인법」 제86조의4가 내용 면에서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와 유사하지만,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변호사업무보다도 더욱 강한 엄결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의 법정형은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거나 최소한 동일하여야 하고, 「변호사법」 제116조와 같은 몰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8. 11.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8-76호(시행 2018. 11. 19.)〉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5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원래 「공증인법」 제86조의4는 내용 면에서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정형을 「공증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변호사업무보다도 더욱 강한 엄결성(廉潔性)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몰수 규정이 적용되지만(변호사법 제116조 참조), 「공증인법」에는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본다면,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의 법정형은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거나 최소한 동일하여야 하고, 「공증인법」에도 「변호사법」 제116조와 같은 몰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이왕 「공증인법」 위반죄에 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검토할 것이라면 우리 협회는 그 기회에 국회가 「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의 법정형이 적당한지, 그리고 동조 위반죄에 대하여 몰수 규정을 둘 것인지 등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3. 이상과 같이 「공증인법」 개정안에 관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1. 21.자)

□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고자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98호)에 대하여, 협회는 개정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임의적 지급 유예는 법률상으론 재판상으론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될 경우 ‘임의적’이라는 표현과 ‘법률상으론 재판상으론’이라는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되므로, 차체에 조문의 제목을 ‘지급 유예 기간의 불허’로 바꾸고 내용을 “지급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8. 11.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18-78호(시행 2018. 11. 21.)〉

1.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6398)은 그 제안이유에 따르면, 어음법 제74조의 “은혜일”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으로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이므로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먼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임의적 지급 유예는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에서 ‘임의적’이라는 표현과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이라는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률상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입법 체계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채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왕 「어음법」 제74조를 개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제목은 “[지급 유예 기간의 불허]”로 바꾸고, 내용은 “지급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 협회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공증업무 질의·회신

1 1999년도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공증인 현황 관련 법원 사실조회 회신(2018. 1. 18.자)

□ 사실조회 내용(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소액) 사실
조회

사건 2017가소○○○○○ 약정금
원고 김○○ 외 1명
피고 주식회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
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사실조회 목적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차○○은 1999
년경 분명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원고
들의 아버지인 김△△의 사망에 관한 부
당한 산재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
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이를 공
증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9월 14일에 현재 직
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공증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을 하였고, 귀원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
면, 당시에는 공증인이었으나 현재는 그
직무가 종료된 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누락
되어서인지 아직은 위 공증 사실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
여 당시 공증인이었던 자 및 서류를 인계
받은 공증인 유무를 확인하여 다시금 위
공증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위 공증서류가 이 사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고의 이 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조회할 곳

대한공증인협회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403호
(서초동, 변호사회관)

3. 사실조회 할 내용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관할구역 내에서,

가. 1999년 8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증
인의 명칭 및 주소

나. 위 가.항 기재 공증인 중 그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이에 면직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되어 「공증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 공증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공증인과 인계를 받은 공증인의 명칭 및 주소

에 관한 자료를 사본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5호(시행 2018. 1. 18.)〉

1. 귀 법원의 사건번호 “2017가소○○○○○ 약정금” 사실조회와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증인법상 2010. 2. 5.부터 의무가입단체로 되어 그 이전까지는 전국의 모든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공증사무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3. 참고로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 관할구역에서 1999년 8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협회 회원이었던 공증사무소에 한정하여 불임과 같은

명단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2)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특별자치도나 자치구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가 인계되며, 1999년 8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의 공증인 중 현재까지 사이에 사망, 면직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되어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 공증인 등의 현황 자료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75조).

(3)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이 된 합의서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 보이는바, 사서증서 인증일 경우 그 사본의 서류보존기간은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최대 3년입니다. ☐

* 불임 : 1999년 8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대한공증인협회 회원 중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관할 구역(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내 회원 명단

순번	회원 명칭
	사무소 주소
1	법무법인 세명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1번지 대성빌딩 1층, 5층

순번	회원 명칭
	사무소 주소
2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5번지 강동빌딩 8층
3	동일종합 법무법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번지 민도빌딩 1층
4	성심종합 법무법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번지 덕운빌딩 2층
5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23번지 태양빌딩 3층, 4층
6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번지 TLBS빌딩
7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번지 태문빌딩 6층

2 재도부여 시 사용증명원 징구 여부 관련 질의 회신(2018. 2. 9.자)

□ 질의 내용(원문)

재도부여 신청시 사용증명원을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결정문(공정증서번호 기재됨)만 받고도 가능한지요?

● 협회 회신 내용

〈제2차 상임이사회 의결〉

압류결정문에 의하여 집행정본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공증인은 사용증명원 대신 압류결정문을 제출받고서 집행문을 재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합니다(이하,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1 (2014년) 194면 이하,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 개정판 235면 이하 각 참조).

재도부여의 경우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실무상 재도부여는 이미 교부한 집행정본이 분실,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어음수표 공정증서의 경우는 제외)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정본의 재발급과 함께 다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도 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합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지만(민사집행법 제35조),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2조와 제35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7조, 제59조 제1항 참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경우 및 수통 부여신청 또는 재도 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명의 정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특별한 기준이 없기에 재도부여 사유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소명이 있다고 볼 것이지는 공증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공증인은 소명과 관련하여 통상 분실, 멸실을 이유로 하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분실사유신고서를, 강제집행절차에서 사용 중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각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재도부여 사유를 소명하게 합니다.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재도부여 사유 중 분실, 멸실의 경우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재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강제집행절차에 사용 중인 경우 사용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서번호와 사건번호 정도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항은 보통 압류결정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점, 여러 종류의 재산권에 대해 동시에 집행할 목적의 수통 부여와 강제집행절차에 사용 중인 경우의 재도 부여의

경우도 본질적으로 수 개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집행대상 재산권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동시 혹은 순차 집행을 목적으로 부여 신청을 할 경우 거절할 수 없는 점, 사용증명원을 받고 재도 부여한 경우도 집행권의 남용을 공증인이 걸러낼 방법이 없는 점, 사용증명원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집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지만 압류결정문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집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없는 경우란 실제 거의 없다는 점, 설령 집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여러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압류결정문이 제출된 경우를 사용증명원이 제출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증인은 사용증명원 대신 증서번호가 기재된 압류결정문을 제출받고서 집행문을 재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③ 사단법인 총회 참석 인증 관련 질의 회신 (2018. 7. 9.자)

□ 질의 내용(원문)

사단법인 총회 참석인증 시,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법인인감을 변경, 소지한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개요

- ① 2018. 01. 26. 사단법인의 상벌위원회는 이사가 이사회에서 부당한 처신을 하여 사단법인의 시설물이용금지 처분을 함.
- ② 이사를 즉시 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 ③ 2018. 02. 11. 사단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 03. 18. 정기총회 개최를 결의함(이날 이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므로 결정이 날 때까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사회에 참석함.)
- ④ 2018. 02. 26. 법원은 이사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함.
- ⑤ 2018. 02. 26. 사단법인에서 각 사원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 ⑥ 2018. 03. 18. 공증담당 변호사님이 참석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와 임기 만료된 이사장 및 감사의 변경의 건에 대해 결의함.
- ⑦ 사단법인의 정관 제14조 1항에 의해 부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함.
- ⑧ 사단법인은 총회 후 의사록 인증을 위해 법원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사가 법인인감을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됨.

사단법인 총회의사록 인증 시 사원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증 시

에도 해당이 되는지, 위 사안의 경우 업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45호(시행 2018. 7. 9.)〉

-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원명부를 제출하게 하여 사원인 사실 및 의결정족수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사원명부는 총회소집업무를 집행한 대표자(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인)가 작성한 사실이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 따라서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의 사원명부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청문인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참석인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법인의 대표자가 인감의 날인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에는 의사록을 인증할 수 없으며, 이는 참석인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대표자를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원이 소집절차를 진행하며, 또한 사원명부도 작성할 것이다.

- 또한 사단법인 상벌위원회의 이사장에 대한 시설물이용금지 처분으로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법원의 가처분 등 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이용금지처분을 이유로 부이사장이 의장으로 총회를 진행한 것은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회의로서 의사록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인의 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

4 전자문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의 회신 (2018. 7. 9.자)

□ 질의 내용(원문)

확정일자의 청구대상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위의 예규를 전제 한다면

1. 전자문서에도 확정일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자문서일 경우 원본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여와 관련하여 공증사무소에서는 그 부여가 불가하다고 하는 한편 등기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예규가 공증사무소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4. 전국의 공증사무소에서 보험회사의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면 그 업무가 위법한지 여부?
5. 전자문서가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여가 불가하다면 법무부와 공증인협회 차원에서 전체 공증사무실에 공문으로 공지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경위〉

수년간 보험회사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화재보험증권 원본에 확정일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화재보험증권은 전자문서로 바뀌었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청구로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진술을 듣고 확정일자를 날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자문서 원본 진위 여부를 공증실에서는 확인 할 수 없기에 확정일자부여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보험회사 측의 전자문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법무부의 답변은 등기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가까이 있는 공증사무실을 두고 멀리 있는 등기소까지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는 고충에 대해 많은 이의가 있습니다.

항상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상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46호(시행 2018. 7. 9.)〉

-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어서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게 하는 것은 「민법」 부칙(1960. 1. 1. 시행) 제3조에 근거하고, 구체적 사무처리 는 사문서에 관한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는 것이 관례임 {다만 이 예규는 대법원의 행정예규로서 그 담당공무원을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 제외),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 제외)로 한정하고 있어서 검찰청 소속인 공증인은 제외되어 있는바, 공증인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위 예규에 따라야만 하는지는 의문임}.
- 위 규정들에는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

법」에도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전자문서 자체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음. 질의 내용을 전자문서의 출력물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지로 설회하여 보자면, 작성자 인의 날인까지 그대로 출력된 전자문서의 출력물에는 확정일자인을 부여할 수 있음.

-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고 공란이 없는 완성된 문서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자문서의 출력물이 원본이고 공란이 없는 완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확정일자인을 부여할 수 있음. 원본인지 여부는 각 공증인의 책임하에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확정일자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민법 제450조 제2항)이나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의 경우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의 통지·승낙(민법 제 349조, 제450조), 변제자대위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통지·승낙(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 증서(민법 제502조), 배서금지어음·수표 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발행인의 통지·승낙(어음법 제11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2항) 또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민법 제1069조 제2항)와 같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

써 법률 규정상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부여하는
것을 자제하여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서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진정성립 문서로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

5 의사록 관련 질의 회신(2018. 7. 9.자)

□ 질의 내용(원문)

사단법인(시장변영회) 총회 의사록과 관
련하여, 회원 중 1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의하여
“이사 변경등기 및 공증업무가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니 총회
의사록을 포함한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1) 공증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
로 보이는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혹시나 싶어서 문의
합니다.

(2) 만약, 위 회원이 의사록과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교부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요?
(참고 - 위 회원은 총회에서 많은 질문
을 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녹취록 수준
으로 작성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 위 회원이 공증인법 제4
3조1항의 “증서의 취지에 관한 법률
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는 법 43조1
항에 의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
당되나요)

(3) 만약 위 회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
다면, 의사록의 모든 부속서류까지 열람
및등본발급을 해줘도 되는지요?(공
증인법 제43조1항, 제50조1항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
습니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1항
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
는 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위임장(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어 있
음) 등은 제3자에게 제공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을 불허하는
것이 맞나요?

혹은 촉탁인의 동의(법5조 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부속서류까지 열람
및 등본발급을 허용해도 될까요? (부속
서류에는 이사 등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47호(시행 2018. 7. 9.)〉

- 공증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따라서 공증인은 위 법률을 근거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공개 의무가 없음에도 공개하면 「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 회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록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 따라서 회원이 「공증인법」에 근거하여 의사록과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청구를 한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의 의사록 인증서 부속서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청구에 대하여는 공증인법상 허용과 불허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속서류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⑥ 사단법인 총회 참석 인증 관련 질의 회신 (2018. 7. 9.자)

□ 질의 내용(원문)

○○문화원이 본 공증인 사무실에 총회의 사록 공증을 요청하였으나, 본 공증인은 의사록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정족수 상당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원은 대한공증인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자 원하므로 이 건 질의에 이르렀습니다.

— 다 음 —

1. ○○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2. 원장선출에 관한 정관의 규정

가. 정관의 규정

제24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② 위 제1항 제1호 임원 선출 중 원장선거 및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로 위임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문화원의 원장선출은 총회결의 사항이고,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자가 경합하는 경우 최다 득표자를 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원장의 선출

○○문화원은 원장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원장후보자가 1인 등록으로 무투표로 원장을 당선시켰다.

4. 질의의 요지

가. 총회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신 원장선거시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서류 및 당선증 제출로 공증이 될 수 없는지?

나. 또는 법적으로 공증에 필요한 합당하며 간소한 서류 제출 방법은 없는지?(참석공증은 제외)

* 질의 내용에 첨부된 ○○문화원의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문화원의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서 등은 생략.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48호(시행 2018. 7. 9.)>

○ 법인 등기를 할 때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그러한 의사록에 대한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 공증인이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의사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로 하여금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를 통해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됨(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

- 법인 의사록을 대리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의사록 작성자 및 의결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인증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 즉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위임장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함(공증인법 제31조).
- 질의한 사단법인의 경우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가 아닌 한 의사록작성자 및 정족수 이상의 회원이 촉탁인이 되어 직접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과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촉탁인 경우 위 촉탁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 달리 인정되는 별도의 방법은 없음.
- 내부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서류 및 당선증 등의 제출로 위 법인의사록 인증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1인 단독 입후보에 따른 무투표 당선으로 그 입후보자가 사단법인의 원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총회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이유도 없음. ☒

7 유언공정증서 정본의 수통부여 발급 관련 질의 회신(2018. 10. 26.자)

□ 질의 내용(원문)

공정증서를 수통부여하는 경우 공증인은 신청인(유언집행자)에게 왜 수통이 필요한지 사유를 듣고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받으면,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복사하여 해당 공증인의 직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 데, 원본이 아닌 신청인(유언집행자)이 지참한 정본을 복사하여 정본 수통발급을 하는 경우, 이 수통 발급한 정본이 유효한 정본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본을 멸실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증인법」 제41조에 의거 소속검찰청의 인가를 받아 정본 또는 등본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1조(원본멸실)

-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

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증서 원본이 사무실에 보관 중 인데도 원본이 아닌 신청인이 소지한 정본을 복사하여 수통부여한 정본이 유효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2018. 9. 12.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전화상담신청을 하여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 서면으로 질의하는 바입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73호(시행 2018. 10. 26.)〉

- 질의의 요지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작성함에 있어서 증서 원본을 복사하지 않고 신청인(유언집행자)이 지참한 정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본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작성한 정본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의 정본을 재교부할 수 있다(※ 주: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정본 1통이 유언집행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본을 관할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에 제시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한 후 정본을 되받아서 다른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또 사용하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본 수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공정증서의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소정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47조 제1항).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공증인법 제47조 제2항). 공증인이 정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본에 기재하고,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49조).
- 증서의 정본에는 증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전문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표지부터 공증인이 서명날인한 것까지 공정증서의 전체를 말한다.

- 그리하여 통상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표지부터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복사하여 이를 전문으로 삼는다. 공증인에 따라서는 증서 원본의 표지는 복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부분은 복사본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제12호 서식 용지에 공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 신청인(유언집행자)이 지참한 정본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령, 원본철에서 빼내서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 번거로워 정본을 복사하는 방법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본의 내용과 정본이 일치한 것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정본 발급 후 즉시 그 사실을 원본에 기재하는 등 정본 발급에 관하여 「공증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 정본도 유효한 정본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신청인이 지참한 정본을 복사하고, 그것으로 정본을 작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원본에 기하지 않은 정본 발급으로 「공증인법」을 위반하였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떤 사정으로 신청인이 지참한 정본의 기재가 원본과 다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애초의 정본도 무효이고, 무효인 정본에 기하여 작성된 새로운 정본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의 정본 발

급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8 확인서 및 합의각서 수수료 산정기준 질의 회신(2018. 10. 26.자)

□ 질의 내용(원문)

1. 질의 요지

공증사무소 간 수수료 산정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별첨 확인서 및 합의각서를 사서증서 인증함에 있어,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참고로 다른 공증사무소에서는 위 확인서 및 합의각서를 인증함에 있어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2. 별첨 확인서 및 합의각서

합의서 및 합의각서																																																							
확인인 ○○○○																																																							
상기 확인인은 ----- 설비공사 및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합니다. — 다 음 — 1. 위 공사의 총 대금은 금일십오억사천이백오십만구천원(₩2,542,509,000원)으로 위 금원 중 아래 금원을 확인인 ----- 공사비용 및 용역비용으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차</th> <th style="width: 25%;">금액(원)</th> <th style="width: 30%;">협력업체명</th> <th style="width: 30%;">비고(지급일, 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53,820,000</td> <td>-----</td> <td>30,000,000 (5/10)</td> </tr> <tr> <td>2차</td> <td>254,250,900</td> <td>-----</td> <td>45,000,000 (5/11)</td> </tr> <tr> <td>3차</td> <td>409,000,000</td> <td>-----</td> <td>20,000,000 (5/04)</td> </tr> <tr> <td>4차</td> <td>195,000,000</td> <td>-----</td> <td>85,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15,0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계</td> <td>912,070,900</td> <td></td> <td></td> </tr> <tr> <td></td> <td>315,000,000</td> <td></td> <td></td> </tr> <tr> <td>5차 (금회청구)</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1,227,070,9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2. 2018년 월 일 현재 잔액은 총 공사대금에서 위 표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일십삼억일천오백사십삼만팔천일백원정(₩1,315,438,100)이며, 위 금원 중 위 확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부가세포함 금일십이억이천칠백칠만구백원정(₩1,227,070,900)임을 확인합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부체소합의). ▷ 첨부서류 : 1.----- 2.----- 2018. . . ○○○ (인) ----- 귀중				차	금액(원)	협력업체명	비고(지급일, 기타)	1차	53,820,000	-----	30,000,000 (5/10)	2차	254,250,900	-----	45,000,000 (5/11)	3차	409,000,000	-----	20,000,000 (5/04)	4차	195,000,000	-----	85,000,000			-----	15,000,000													소계	912,070,900				315,000,000			5차 (금회청구)				합계	1,227,070,900		
차	금액(원)	협력업체명	비고(지급일, 기타)																																																				
1차	53,820,000	-----	30,000,000 (5/10)																																																				
2차	254,250,900	-----	45,000,000 (5/11)																																																				
3차	409,000,000	-----	20,000,000 (5/04)																																																				
4차	195,000,000	-----	85,000,000																																																				
		-----	15,000,000																																																				
소계	912,070,900																																																						
	315,000,000																																																						
5차 (금회청구)																																																							
합계	1,227,070,900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72호(시행 2018. 10. 26.)〉

1. 인증 수수료에 관한 규정

법률행위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하며(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수수료는 사실의 실험(경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5조).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

따라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계산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이지만 그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 원이 된다.

2. 의사표시 등과 인증 수수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구성하는 자신이 이행할 급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사서증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그 의사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와 하등 차이가 없

으므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이행할 급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확인한 경우도 법률행위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그 목적가액은 그 당사자의 급부 가액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서증서 인증에서는 촉탁인의 급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급부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급부가액을 목적가액으로 보면 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

3. 질의 사안의 사서증서에 대한 검토

질의 사안의 사서증서는 공사도급계약 당사자인 확인인이 설비공사 및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이 2,542,509,000 원이고, 그 중 1,227,070,900원을 지급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현재 잔액은 1,315,438,100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부제소합의).’ 라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사서증서는 확인인이 총 공사대금 2,542,509,000원에 공사를 수

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공사대금의 잔액이 1,315,438,1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문서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목적가액은 확인인이 확인한 자신의 급부가액의 총액인 공사대금 총액인 금 2,542,509,000원이다. 또한 그 목적가액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300만 원으로서 그 반액은 150만 원이지만,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질의 사안의 수수료는 50만 원이다. ☐

9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요건 및 절차 관련 질의 회신(2018. 11. 6.자)

□ 질의 내용(원문)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산경매 진행 중 집행 불능으로 귀 소속 창원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서류의 미비로 거절된 사실이 있습니다.
- 당시 귀 사무소에 접수 시 첨부한 서류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그리고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에 따른 사망자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요건서류 및 절차가 있다면 조문이나 규범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자는 나름 소속법원, 법무사 변호사 인근 공증사무소에 문의 및 상담한 결과는 귀 법무법인의 판단과 서류제출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 공증인 박상진의 논문 “집행증서의 법률관계” 내용 중 포괄승계의 부분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사망자승계집행문부여, 제2조제5항제5호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위 2항의 조건의 서류만 교부할 뿐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당사자 외는 제출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하여 보정명령을 법원에서 하여야하나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 공증인협회에서 공증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상의 요건과 절차가 있다면 위 사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18-75호(시행 2018. 11. 6.)〉

1.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으면 공증인 등은 그 집행증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그 내용이 집행에 적당한 것인가, 집행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는가, 승계집행문의 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가 증명되는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14년판 제235쪽 참조).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56조의2, 같은 법 제56조의3)에서는 증서상의 채권자, 채무자와 증서 작성 후의 포괄·특정승계인(민사집행법 제57조, 제31조)에게 집행당사자적격이 있는데(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014년판 제166쪽 참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서는 그 승계가 공증인에게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참조).

2. 채권자가 본 건과 같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

행문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승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 :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소에서 통상 피상속인의 선대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포함) 등을 제출받고 있음).

3. 통상적으로는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서, 채무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망 채무자의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 :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민법 제908조의 3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는데(법원행정처 2012년 8월 발간 ‘상속등기실무’ 제174쪽 참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임)와 승계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승계인(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3항 참조)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공증사건과 관련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

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공증
인이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귀하께서 만일 공증인의 집행문부
여 거절에 대하여 불복하시고자 한다면,
그 방법으로는 「공증인법」 제81조에 따
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
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제
34조제1항 등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Ⅲ. 공증업무 지침·지시 등 회원 안내

1 협회와 법무부 특별감독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회원 안내(2018. 2. 13.자)

- 협회는 공증사무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에 공증인법 제78조(감독 기관)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일부 위탁을 2017. 9. 공식 건의한 데 대하여 법무부는 정기 검열과는 별도로 비위 혐의가 짙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협회와 합동으로 검열 활동을 실시키로 2017. 12. 14. 결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도 상반기 중 비위 혐의가 짙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법무부·협회 합동 특별검열이 실시될 예정임을 2018. 2. 13. 각 회원 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13호(시행 2018. 2. 13.)〉

제 목 : 협회와 법무부 특별감독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협회는 2015년 7월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브로커를 동원한 번역인증 수수료 할인이나

집단촉탁을 매개로 한 수수료 리베이트 제공 등과 같은 일련의 공증사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해 공증브로커와 공증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일부 공증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 제공을 미끼로 비위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비위행위의 근절을 위해 협회 감독활동을 활발히 펴나갈 것을 요구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협회는 이와 같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증촉탁을 둘러싸고 금품 등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는 공증인이나 보조자 또는 이를 제공하는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공증인법 제86조의4)이 신설·시행된 것을 계기로 조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에 앞서 협회와 조사위원회가 비위 행위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증인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협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무부는 최근 협회의 위와 같은 건의에 따라 정기 검열과는 별도로 비위 혐의가 짙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협회와 합동으로 검열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제2기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와와의 합동 검열을 준비하여 상반기 중 비위 혐의가 짙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검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고 합동 검열이나 준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사항 등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11776
(2017. 12. 14.자) 공문 내용

제목 : 법무부·대한공증인협회 합동 특별감독
실시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1. 법무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비대면 공증이나 수수료 할인행위 등 공증사무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바, 그 노력의 결과로 공증변호사가 공증브로커 집단폭탁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증사무소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불법분양권전매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 억원의 수수료를 취하고 그 중 40~50% 상당을 공증브로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공증사무소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일부 위탁 규정(공증인법 제78조)에 근거하여,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보 및 공증 신뢰 회복을 위해 연중 귀 협회와 합동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화상공증제도 시행 예정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회원 안내(2018. 2. 13.자)

- 법무부가 2018년 3월경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정공증인 명단 재정비 차원에서 협회에 요청해 온 화상공증제도 시행 및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 공문을 각 회원사무소에 회람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14호(시행 2018. 2. 13.)〉

제 목 : 화상공증제도 시행 예정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3월 경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면방식의 변화, 전자공증 건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8 2. 12.부터 2018. 3. 5.까지 3주간 지정공증인 신규 지정 및 취소 신청을 받아 지정공증인 명단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 시행 및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 공문 사본을 귀 회원께 전달하여 드리오니, 붙임 안내문 등을 참조하여 지정공증인 지정 또는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상기 기간 중에 법무부 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2007
(2018. 2. 13. 시행) 공문 내용

제목 : 화상공증제도 시행 및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

1.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대면방식의 변화, 전자공증 건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8. 2. 12.부터 2018. 3. 5. 까지 3주간 지정공증인 신규 지정 및 취소 신청을 받아 지정공증인 명단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3. 지정공증인 지정 및 취소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붙임1), 지정공증인 지정신청서(붙임2),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서(붙임3)를 전국 공증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내문

화상공증 제도 시행 및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문

-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2018. 3.경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등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라 함)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은 기존과 같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대면방식의 변화, 전자공증 건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8. 2. 12.부터 2018. 3. 5.까지 3주간 지정공증인 신규 지정 및 취소 신청을 받아 지정공증인 명단을 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인가공증인 또는 임명공증인 중에서 지정공증인으로서 전자공증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증인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http://enotary.moj.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지정

공증인 지정신청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법무부 법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에 필요한 웹캠 등 장치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화상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공증인 지정취소를 원하는 지정공증인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http://enotary.moj.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신청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무부 법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지정공증인 지정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2018. 3.경 지정공증인과 보조자를 대상으로 화상공증 등 전자공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전자공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법무과(담당자: 사무관 윤성훈, 공익법무관 박찬호, 보호주사보 국지환, 02-2110-3171, 3163, 3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지정공증인 지정신청서

지정공증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명칭)	
	사무소 주소 (설치 예정지)	(전화번호 :)
「공증인법」 제66조의3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공증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수 수 료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 g/m²)

210mm×297mm(백상지 80 g/m²)

3 참석인증 시 법령준수 촉구 회원 안내
(2018. 3. 7.자)

-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의사록 참석인증과 관련하여 검사 수수료 할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는 공증사무소가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공증인법 개정으로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워 촉탁을 유치한 경우에는 단순히 공증인의 징계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는 공증인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된 공증인 보조자 및 공증브로커까지도 모두 해당된다는(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 제2항) 점을 2018. 3. 7. 각 회원사무소에 환기시킴.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19호(시행 2018. 3. 7.)〉

제 목 : 참석인증 시 법령준수 촉구

1.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사록 참석인증과 관련하여 검사 수수료 할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는 공증사무소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공증인법」 개정으로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워 촉탁을 유치한 경우에는 단순히 공증인의 징계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었고, 이는 공증인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된 공증보조자 및 공증브로커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공증인법 제86조의4제1항, 제2항).

3. 한편, 공증인이 법인의사록에 관한 참석인증을 위해 직무집행구역이 아닌 장소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이나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4항). 애초 관보에는 참석인증을 위한 출장검사는 조건 없이 직무집행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처럼 게재되었지만 이는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참석인증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이나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협회는 출장공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수료 할인행위 등 법령위반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으로 직무집행구역 외의 출장공증에 관한 사전허가제와 별도로 직무집행구역 내의 출장공증에 관한 사후신고제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5. 아무쪼록 회원들께서는 수수료 할인행위를 근절시키는 협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변에 수수료 할인을 내세

위 참석인증을 위한 의결장소에서의 검사 촉탁을 유치하거나, 허가 없이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출장 공증하는 공증사무소가 있다면 즉시 협회에 신고(익명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 확인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2018. 8. 30.자)

- 협회가 2013. 5. 발행한 개정판『공증 실무』 109면에 게재된 “(4) 증인 결격사유의 확인방법” 중 인감증명서 제출만으로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으로 더 이상 인감증명서에 의해서 결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언공증 시 유의해 줄 것을 2018. 8. 30.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64호(시행 2018. 8. 30.)〉

제 목 : 증인 결격사유 확인 시 주의사항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언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회가 2013. 5. 발행한 개정판『공증실무』 109

면에 게재된 “(4) 증인 결격사유의 확인방법”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여부는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5조제4호, 제5호 참조).”는 부분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개정)으로 더 이상 인감증명서에 의해서 결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언공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무부 문서번호 법무과-8304
(2018. 7. 13.자) 공문 내용:

제목 : 공증실무(2013년판) 수정 등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발생한 공증실무(2013년판) 109면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여부는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현행법령 및 실무와 달라 일부 공증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과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통보하여 인감대장에 등재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06호, 2013. 12. 17. 일부 개정] 제7조 제6항은 같은 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일부 개정 참조]으로 삭제되었고, 실무상으로도

인감증명서의 발급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공증
실무 개정판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시고,
공증인들과 공증보조자들에게도 적절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IV. 협회 주요 활동

1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 위원 추천(2018. 2. 6.자)

- 법무부가 협회에 추천 의뢰한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김승훈 재무이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2018. 2. 6. 법무부에 추천함. ☑

2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2018. 5. 8.자)

- 법무부가 협회에 추천 의뢰한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최영룡 수석 부협회장, 임명 공증인 박상진 법제교육위원회 위원을 2018. 5. 8. 각각 법무부에 추천함. ☑

3 상임이사 보직 변경(2018. 8. 13.자)

- 2018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2018. 8. 13.) 의결로 상임이사 일부의 보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이승호 상임이사 : 종전 회원 담당에서 재무 담당으로 변경
 - 문정환 상임이사 : 종전 공보 담당에서 회원 담당으로 변경 ☑

4 법제담당 상임이사 보선(2018. 9. 14.자)

- 2018년도 제3차 이사회(2018. 9. 14.) 의결에 따라 2017. 12. 31.자로 사임한 한정화 전 법제담당 상임이사의 후임 법제담당 상임이사로 임명공증인 박중옥(1961. 10. 29. / 연수원 34기) 변호사를 보선함(근거 : 회칙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박중옥 법제담당 상임이사 주요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위원
- 경찰서 경찰발전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 등 역임
- 2016. 3. 공증인 임명(서울남부지검 소속)
- (논문) 유언공증에 관한 고찰, 「공증과 신뢰」 2017년도 통권 제10호 ☑

5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개정 법무부에 건의(2018. 11. 1.자)

- 협회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장수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증서의 장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외하고 있는 표지도 다른 법정서식이 의한 장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장수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서증서

인증 등의 경우 인증서 사본 등을 보존할 경우에도 등본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협회 차원의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시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해주거나 아니면 차제에 법무부 지침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2018. 11. 1. 요청함. ☐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18-74호(시행 2018. 11. 1.)〉

제 목 :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제정 건의

1. 우리 협회 문서번호 제2018-70호(시행 2018. 10. 19.)와 관련입니다.
2.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장수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우선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공증실무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증서의 장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표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규칙’이라 함)」 제3조가 정한 장수 초과 부가수수료는 장수 증가에 따른 중

이 값 또는 공증인의 서류보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식규칙’이라 함)」에서 필수 서식으로 정하고 있는 표지를 서식규칙의 다른 법정 서식과 달리 해석하여 서식규칙 제3조 규정의 장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근거가 없고, 특히 ② 서식규칙 제3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본다는 장수 기준의 경우도 표지 자체가 이미 법정서식으로 사용 중인 만큼 그 기준과 무관하게 1장으로 취급되는 것이 서식규칙의 입법취지에 맞다 할 것이며, ③ 통일된 표지 사용 또한 공정증서를 외관상 공문서로 쉽게 추정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법정서식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표지도 다른 법정서식에 의한 장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장수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증사무 처리 방법으로 정한 1991년 또는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의무로 정해진 2010년부터는 최소한 ‘수수료규칙’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

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는 수수료규칙 제26조 규정을 근거로 공증사무소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수수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서 사본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보면 초과 장수에 따른 부가수수료에 준하여 1장당 500원이 되고, 인증서 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증서 사본을 제작하는 관점에서 보면 등본 발급 수수료에 준하여 1장당 500원이 되는바,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에 따른 수수료는 어느 모로 보나 각 장당 5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증서의 장수 계산 시 표지를 제외하던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함과 아울러 표지도 장수로 계산하도록 하며, 사서증서 인증 등의 경우 인증서 사본 등을 보존할 경우에는 등본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동 업무처리방법은 2018. 10. 13.(토) 개최된 우리 협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의안 제5호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업무처리방법으로서,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실적회비 변경 책정

안 및 그 전제조건인 업무처리방법을 승인의결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은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해서 귀 부가 유효한 업무처리방법으로서 승인하여 주시거나 귀 부의 공증사무지침으로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바, 이와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협회의 2019년도 장부인증 사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동 사무는 늦어도 2018년 11월 중순에는 개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귀 부의 승인 또는 지침 제정에 관한 의견을 가급적 11월 15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제정 건의 1부.

I.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방법은 공정증서나 인증서의 장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장수 수수료’라고 한다)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된 공증업무처리제도모함에 있다.

제2조(법정서식 등과 장수 계산) ① 공증인이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

우에는 1행 20자 24행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때에도 서식마다 1장으로 본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인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인용 서면으로 이루어진 장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보존에 따른 장수 수수료) ①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공증인이 동조 제4항에 따라 그 인증서 사본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1장 당 500원의 장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공증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의 상한액과 장수 수수료의 관계) 제3조의 장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의 상한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산서예의 표시) ①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소정의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증서초과매수료’란 중 ‘수량’란에 증서의 총장수에서 4장을 뺀 장수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총장수에서 4장을 뺀 장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을 장수 수수료로 기재한다. 이 경우 총장수에서 4장을 뺀 장수가 음의 수나 0이 된 경우에는 ‘금액’란에 0이라 기재한다.

② 공증인이 제3조제1항이나 제2항의 인증에 따라 제1항의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증서초과매수료’는 장수 수수료라 고치고, ‘수량’란에 인증서 총장수를 기재하며, ‘금액’란에 그 총장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을 장수 수수료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인증서사본이라고 기재한다.

부 칙 (. . .)

이 업무처리방법은 법무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II. 건의(제안) 이유

1. 공정증서 표지 등의 장수 산입 필요성

(1)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공정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더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그 경우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증인이 의무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법정서식에 대하여도 장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법무부는 2013. 1. 대한공증인협회에 보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산정 관련 설명자료 송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유권해석에 따르면 먼저 “증서 장수는 표지를 제외한 모든 장수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다음, “서식규칙의 법정서식에 대하여는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법정서식의 글자 수에 관계없이 1장으로 봄”이라고 하였다. 즉 법정서식에 대하여는 장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체로 글자 수에 관계없이 서식마다 독립된 1장으로 보지만, 표지는 예외적으로 독립된 1장으로 보지 않고 애초 장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2)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장수초과 부가수수료는 종이 장수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종이 구입비나 보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표지도 다른 법정서식과 동일하게 종이 구입비나 보존 부담을 늘게 하는 것이므로 표지를 다른 법정서식과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처럼 1장의 기준이 없으면 글자의 크기나 자간 거리 또는 행간 거리 혹은 여백의 유무나 여백의 크기 등 증서를 작성할 때 글자를 적는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장수가 달라지고

그 결과, 수수료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라면 늘 동일한 부가수수료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1장을 글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법정서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한 때는 장수가 달라질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에는 글자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장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표지의 경우에도 전혀 다르지 않다.

셋째, 작성방법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바(「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통일된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고, 표지는 누구나 그것이 공정증서임을 쉽게 인식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로서 다른 어떤 법정서식보다도 중요하므로, 장수 계산에 있어서 독립된 장수로 취급함이 마땅하다.

- (3) 결론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부가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장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표지에 대하여 장수 산입에서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유권해석은 변경되어야 한다.

- (4) 한편,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인용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공증인법」 제39조 참조), 그 경우에도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글자 수를 공증인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서면에 의한 장수에 대하여는 법정서식에 따른 경우에 준하여 글자 수에 관계없이 그 자체의 장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2.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 인정 필요성과 그 수수료 액

- (1)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 「공증인법」 제57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인증서 사본을 제작·보존하여야 하지만, 동 규정들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9. 2. 6.자 공증인법 개정 때 비로소 신설되었다. 공증인이 이와 같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을 제작·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징수한다면 얼마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증업계에는 현재 여러 가지 견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협회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법률행위에 관한 장수초과 부가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4장을 초과할 경

우에 그 초과하는 장당 5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장당 25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 2장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장당 5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장당 25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 및 사본 총 장수에 대한 각 장당 5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실무처리 방법도 제 각각이다.

따라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2)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어느 규정에 근거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을 보존하게 된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에 관해서는 2009. 2. 6.자 「공증인법」 개정 때 비로소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공증실무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을 보존하였다. 처음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공증사무소 임의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을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비대면공증의 관행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공증사무소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증서 사본을 보존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감독기관인 법무부로서도 공증 사무에 관한 사후감독을 위해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을 보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90. 10. 13.자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에 공증 사무소에 비치할 편철장부의 하나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을 규정하는 한편, 1990. 11. 30.자에 제정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일 1991. 1. 1.)에서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을 할 때, 영문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을 할 때에 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보존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주 : 그러나 정작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및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에서는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서는 뒤늦게 1992. 9. 14.자 개정(시행일 같은 날) 시에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방법과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

였다(제3조, 제5조). 그 후 보존 의무는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공증업계의 건의에 따라 2009. 2. 6. 「공증인법」 개정(시행일 2010. 2. 7.) 시 제57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 신설되어 비로소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3) 그렇다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존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본 제작·보존이 법령에 따라 새로이 공증인의 의무로 되었다면, 법리상 동시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도 그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본의 제작·보존에는 필연적으로 공증인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이 법령상 공증인의 의무로 구체화 된 1991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이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두었어야 했고,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공증인법」에 정식으로 근거 규정이 신설된 때부터는 수수료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여전히 그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입법불비이다(※ 주 : 공증인이 법률행위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증서의 장수

가 4장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장당 받는 500원의 수수료는 증서의 보존에 따른 수수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등을 할 때 촉탁인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한 정보에 대하여 보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증인법상 보관요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은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정보의 보관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이와 같은 입법불비에 대비하여 제26조에서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비록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도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국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보존과 가장 유사한 사항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에서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것은 증서 보존에 따른 공증인의 부담에 관한 수수료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 : 장수초과

부가수수료를 장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증인의 노고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금액이 장당 500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존에 관한 수수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장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서류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은 이와 유사하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1항에서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정한 것은 통상적인 계약에 관한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4장까지는 증서의 보관 등에 따른 부담에 관하여 기본 수수료 금액 안에 그 부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4장이 초과될 경우에는 따로 보상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 :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볼 때 보통은 3장(즉, 글자 수 961자 내지 1,440자)으로 이루어지고, 짧은 내용인 경우는 2장(즉, 글자 수 481자 내지 960자)이면 되고, 긴 내용일지라도 통상 4장(즉, 글자 수 1,441자 내지 1,920자)이면 족하다. 5장(즉, 글자 수 1,921자) 이상일 경우는 공증실무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관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를 적용할 때는 4장 이내의 각 장과 4장을 초과하는 각 장 사이에는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는 그냥 장당 5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5) 또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은 공증인의 부담으로 일단 원본을 전부 사본하여야 하는 업무를 요하는 바, 그 사항만을 놓고 본다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의 등본 발급 업무와도 유사하다. 등본 발급을 위해서도 일단 원본을 전부 사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 : 공증인수수료규칙 제24조제1항 본문과 단서를 종합하면 등본 발급 과정을 2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공증인이 촉탁인이 준비해온 서류가 원본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는 조치에 따른 수수료가 200원이므로, 원본을 사본하는 과정의 수수료 뺀 장당 300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를 장당 500원으로 본다면 사본 제작 과정의 수수료 뺀 장당 3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장당 200원은 사본 보존에 따른 수수료 뺀 것이다). 이 점에서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의 제작·

보존에 따른 수수료는 등본발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장당 500원이 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제1항).

- (6) 결론적으로 사서증서 인증 시 장수에 관한 수수료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만 발생되고, 그 수수료는 사본의 총 장수에 대한 각 장당 500원이며, 장수 초과 부가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아니한다(※ 주 : 정관이나 의사록 인증 또는 선서인증의 경우에는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다음, 그 중 1통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이므로 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신 장수 초과 부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 (7) 한편, 사서증서인증서사본의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를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그것은 사서증서인증의 기본 수수료와는 전혀 별개이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의 수수료상한액과도 무관하다. 즉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 제작·보존에 따른 수수료로 인하여 수수료상한액을 넘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장수 수수료 징수에 따른 계산서 작성

-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함에 따라 장수 수

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에 그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근거와 수수료액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6 제2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2018. 7. 5.)

- 협회와 회원의 공증업무 처리 고충과 실무적 애로사항을 직접 회원들을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권역별 회원 간담회를 추진, 2018. 7. 5.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내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임원과 참여 회원 간 공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간담회 일정 및 내용

- (1) 일시·장소 : 2018. 7. 5.(목) 18:30~21:00, 대구 범어동 소재 한정식 상락
- (2) 참석 회원 : 김중기(법인 법무), 양재환(공증인) 변호사 등 총 15명
- (3) 참석 임원 : 협회장, 총무이사
- (4) 간담회내용 : ① 협회 업무보고
 ② 회원 의견 청취
 - 부동산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 건물이나 토지 인도집행증서 제도 개선 및 확대
 - 신원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창장 또는 외국어로 된 미성년 자녀

에 대한 부모동의서 수수료 등 불합리하거나 규정이 모호한 수수료 규칙 개선 등

- (5) 간담회총평 : 협회 창립 이래 지방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협회 차원의 최초 간담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협회와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확인. ☒

7 중국공증인협회 주최 2018년도 CAAs 정기회의 참석(2018. 9. 5.~2018. 9. 7.)

- 중국공증인협회 주최로 2018. 9. 5.(수)~7.(금)까지 중국 산시성 시안(서안)에서 개최된 2018년도 UINL(국제공증인협회) CAAs(아시아지역위원회)에 참석, 각국의 공증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박형연 총무이사가 “아시아에서 공증 활동 개발에 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of notary-related activities in Asia)”를, 김승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증인 활동을 위한 정보 구축(Information construction for notary activities)”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공증(화상인증)시스템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 등을 포함하여 일대일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공증인 역할 등에 관한 각 회원국의 토론을 진행함.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2019년도 CAAs 위원장 국가로 몽골공증인협회를 내정함.

● 2018년도 CAAs 정기총회 주요 일정

- 일 시 : 9. 5.(수)~9. 7.(금)
- 장 소 : 중국 산시성 시안(서안) 하얏트
리전시 호텔
- 주 최 : 중국공증인협회
- 참 석 : 남상우 협회장, 박형연 총무이사,
김승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동 국제위원회 위원, 사무
국장
- 참가국 : 주최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CAAs 6개 회원국과 옵서버로
캄보디아, 프랑스, 독일 등의
공증인 100여 명이 참석

□ 일정 및 발표 주제

(1) 9. 5(수)

- 17:00~18:00 CAAs 회원국 사전 미팅
- 18:30~21:00 환영만찬

(2) 9. 6.(목)

- 08:00~09:00 입장
- 09:00~09:50 개회식
- 09:50~10:00 단체사진촬영
- 10:00~11:20 세션(아시아에서 공증과
관련된 활동 개발에 관한 소개)
(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of notary-related activities in Asia)
- 11:20~11:50 주제토론1 (공증인 활동을
위한 정보 구축)

(Information construction for notary activities)

- 12:00~14:00 오찬
- 14:00~16:00 주제토론1 (공증인 활동을
위한 정보 구축)
(Information construction for notary activities)
- 16:00~16:20 휴식(coffee break)
- 16:20~17:00 주제토론2 (일대일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The role of notary activiti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17:00~17:20 차기 회의 개최국 등
결정 및 결의안 서명
- 17:20~18:10 폐회
- 19:30~21:30 환송만찬

(3) 9. 7.(금) : 자유일정

● 2018년도 CAAs 정기총회 협회 측 발표문
원문

2018년도 협회지 117면~140면 “2018년도
제8차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
위원회(CAAs) 참가보고서” 참조

⑧ 제12회 공증주간(2018. 9. 17.~2018.
9. 21.) 설정 및 공증인 보조자 교육(2018.
10. 23.) 시행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공증제도가

사인 간 거래 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며,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8. 9. 17.(월)~21.(금)까지를 “제12회 공증주간”으로 설정함.

- 제12회 공증주간 행사는 제3회 공증주간 때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일체의 대내외 행사를 시행하지 않음.
- 다만, 제12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8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을 2018. 10. 23.(화) 14:00~18:00까지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① 공증제도 개관(강사: 법무부 박찬호 법무관), ② 공증감사 시 주요 지도사항(강사: 법무부 손주근 검찰사무관), ③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설명(강사: 협회 박중욱 법제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 교육에 전국 총 228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사무직원 232명(각 사무소별 1명. 단, 4개소는 2명씩 참석)이 참석함. ☐

9 제12회 공증주간 기념 유공 공증인 표창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12회 공증주간(2018. 9. 17.~ 9. 21.)을 기념하여 2018. 10. 15.(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협회가 유공 공증인으로 추천한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삼일 이춘희 변호사와 임명공증인 한정화 변호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함.
- 대구지검 소속 법무법인 삼일 대표 공증담당변호사인 이춘희(1960년생, 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 발전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2015년부터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내 공증인 모임을 주도하면서 지역 공증제도 발전과 예방사법분야로서 공증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공증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이 수여됨.
- 임명공증인 한정화(1963년생, 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및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하면서 공증인법 등 공증법령 개선 활동에 진력하였고, 협회 공증실무상시자문단 발족을 기획하여 회원들의 통일된 공증실무 기틀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약 9년간 임명 공증인으로 재직해 오는 동안 항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공증업무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처리

하는 등 모범 공증인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아 표창이 수여됨. ☐

10 공증인법 제87조 위반 불법광고 업체 상대 형사고발 진행(2018. 12. 14.)

- 「공증인법」 제87조는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에 공증 또는 공증대행, 번역공증과 같은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번역업체 중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회를 대리하는 형사고발대리인을 선임 후, 2018. 12. 14. 종로·서초·서대문·강남·수서·안양동안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기소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짐. ☐

11 2018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1호) 발간

- 협회는 기관지 『공증과신뢰』 2018년도 통권 제11호(총 308면)를 아래와 같이 2018. 12. 1.자로 발간하고, 회원 사무소 및 공증업무대행청, 법원, 검찰, 변호사회, 국공립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유관기관 등 각 2부 또는 3부씩을 배포함.

● 게재 내용

- (1) 시론 - [남상우 협회장] 화상공증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 특집 - (1) [김재수 변호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몇 가지 소고
(2) [남상우 협회장]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 (3) 논단 - [박종순 부협회장]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소고
- (4) 단상 - [안경재 변호사] 공증제도와 ADR
- (5) 수필 - [이중산 변호사] 나는 세상이 알아줄 만한 사람일까? - 선거철에 선량(選良)을 생각해 보며
- (6) 국제 - [박형연 총무이사] 2018년도 CAAs 정기총회 참가보고서
- (7) 교육 - [박중욱 법제이사] 2018년도 공증 사무직원 연수교육 자료
- (8) 공증법령, 협회 제·개정 회규 및 주요 회무 등

V. 2018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18. 1. 5.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후보자 추천 요청 회신 / 대검찰청
- 2018. 1. 8. : 2018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중 법 제 업무 담당 상임이사 재지정 논의 ② 임원 업무 수당 지급 논의 ③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간담회 추진 논의 ④ 법무부에 대한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포스터 제작·배포 건의 안 논의 ⑤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논의 및 제1차 이사회 의안 상정 논의 ⑥ 2018년도 사업계획 논의 ⑦ 법무부와의 합동 특별감독 실시 계획 관련 제반사항 논의 ⑧ (계속 논의 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⑨ 2018년도 사무국 직원 연봉(급여) 책정 논의 ⑩ 기타 논의
- 2018. 1. 15. :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사무국장 임명 승인 (원안 의결) ② 2018년도 사업 계획 승인 (원안 의결) ③ 위원회운영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④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⑤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⑥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승인 (이사회 수정 의결) ⑦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⑧ 기타

- 2018. 1. 16.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 약정금” 사실조회 회신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 1. 16. :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통지 / 총회 대의원 및 법무부
- 2018. 1. 23. :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간담회
- 2018. 1. 26. : 장부 분실에 따른 재인증과 사용연도 도과 후 추가 인증 보고 및 건의 / 법무부
- 2018. 1. 29. :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운영규칙 제정 (원안 의결) ②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원안 의결) ③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 개정 (원안 의결) ④ 재정규칙 일부 개정 (원안 의결) ⑤ 기타

*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회의자료집 및 의사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2018. 2. 2. :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결과 안내 및 보고 / 회원 및 법무부

- 2018. 2. 2.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법무부
- 2018. 2. 5. : 2018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추천 대상자 논의 ②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업무 영역 확대 및 수당 인상 지급 논의 ③ 공증 실무제요발간T/F 집필위원 추가 위촉 및 자료조사비 추가 지급 논의 ④ 임원 업무 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식 변경 논의 ⑤ 법무부와 합동 특별감독 회원 안내문 재검토 ⑥ 공증업무 질의 및 회신 내용 검토 ⑦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검토 ⑧ 2018년도 연회비 책정 논의 ⑨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⑩ 기타 논의
- 2018. 2. 6. :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 위원 추천 / 법무부
- 2018. 2. 13. : 협회와 법무부의 특별감독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 회원
- 2018. 2. 13. : 화상공증제도 시행 예정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취소 신청 안내
- 2018. 2. 19. :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제출 / 법무부

- 2018. 2. 22. : 대표 변호사 및 공증담당변호사 현황 등 보고 협조 요청 / 인가공증인 회원
- 2018. 2. 26. :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 2018. 3. 5. : 2018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안건 논의 ②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③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안) 검토 · 논의 ④ 공증업무 질의 및 회신 내용 검토 ⑤ 임원 업무 수당 지급 절차 재논의 ⑥ 2018년도 사무국 직원 급여(연봉) 책정 재논의 ⑦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⑧ 기타 논의
- 2018. 3. 7. : 참석 인증 시 법령준수 촉구 / 회원
- 2018. 3. 12. :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②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③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원안 의결) ④ 입회비 변경 책정안 승인 (원안 의결) ⑤ 연회비 변경 책정안 승인 (원안 의결) ⑥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원안 의결) ⑦ 기타

○ 2018. 3. 14. :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18. 3. 30. : 법제교육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위원 신청 안내 / 회원

○ 2018. 3. 31. :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규칙
제정 (원안 의결) ② 2017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 (원안
의결) ③ 입회비 변경 승인 (원안 의
결) ④ 연회비 변경 승인 (원안 의결)
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
회계 예산 승인 (원안 의결) ⑥ 기타

*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및
의사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2018. 4. 5. : 2018년도 정기총회 결과안내 및
보고 / 회원 및 법무부

○ 2018. 4. 9. : 2018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제교육위원
회 및 국제위원회 구성 논의 ② 법제
· 공증실무질의 검토 업무의 법제교육
위원회 전담 검토 ③ 법무부 법무실
장 재예방 추진 방안 검토 ④ 2018년
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1호 발간
논의 ⑤ 미납 연회비 징수 방안 검토
⑥ 유언공증 시 유언의 증인 참여 등록
제도 도입 방안 검토 ⑦ 번역인증 시

번역사 등록제도 도입 방안 검토 ⑧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⑨ 기타 논의

○ 2018. 4. 17. : UINL 이사회 개최(2018. 5.
9.~12., 아이보리코스트) 불참 통지 / UINL

○ 2018. 4. 19. : 재외공관 공증 온라인 실무
강의 촬영을 위한 강사 추천 요청 회신 / 외교부

○ 2018. 4. 23. : 2018년도 UINL CAAs
회원국 현황보고서 제출 / UINL CAAs
위원장(중국공증인협회)

○ 2018. 5. 4. : 2018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
11호) 게재 원고 모집 안내 / 회원 및 법원
행정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 2018. 5. 14. : 2018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미납 연회비 회
원에 대한 납부 요청 공문 내용 검토
② 동서 법무법인의 2010년도 이전
미납 연회비 처리에 대한 논의 ③ 연
회비 미납 상태에서 면직 또는 인가
취소된 자에 대한 미수금소송제기
등 논의 ④ 공증실무제요발간TF 집
필위원 추가 위촉 및 자료조사비 추
가 지급 ⑤ 법제교육위원회 및 국제
위원회 위원 선임 ⑥ 법무부·협회 합

동 특별감독 시행 제안 자료 수정안 검토 ⑦ 자산 총액 10억 이상 법인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공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무부 유권해석 변경 건의 검토 ⑧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변경(가족 포함 촉탁인 적격자 범위 확대) 건의 검토 ⑨ 정원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논의 ⑩ 상법상 서면결의의 경우 인증대상 포함 실무 개선 요구 논의 ⑪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⑫ 기타 논의

○ 2018. 5. 15. : 2018년도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통지 / 선임 위원

▶ 신입 법제교육위원회 위원(가나다순.
임기 2018. 5. 14.부터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 김영찬 [임명공증인]
- ☐ 김영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 ☐ 김재수 [임명공증인]
- ☐ 문정환 [임명공증인]
- ☐ 박상진 [임명공증인]
- ☐ 박재우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 ☐ 박중욱 [임명공증인]
- ☐ 윤중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 2018. 5. 15. : 2018년도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 통지 / 선임 위원

▶ 신입 국제위원회 위원(가나다순. 임기
2018. 5. 14.부터 2020년도 정기총

회일까지)

- ☐ 김승열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현]
- ☐ 박중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 ☐ 박형연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 ☐ 배영철 [임명공증인]
- ☐ 석진국 [임명공증인]
- ☐ 소삼영 [임명공증인]
- ☐ 안경재 [임명공증인]
- ☐ 오재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 ☐ 이재동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 2018. 5. 21. : 2018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개최 통지 / 국제위원회 위원

○ 2018. 5. 29. : 2018년도 제1차 법제교육
위원회 개최 통지 /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 2018. 5. 29. : 2018년도 제1차 국제위원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
(위원장 박중순) ② 부위원장 및 간
사 호선(부위원장 김승열, 간사 박형
연) ③ 국제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④ 기타 논의

○ 2018. 6. 4. : 2018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실무상시
자문단의 자문위원 추가 운영 ② 제2
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지역 및 시기
등 논의 ③ 2018년도 「공증과신회」
통권 제11호 집필자 섭외 등 재논의

- ④ 전자공증시스템 내 공증 설명 내용 오류 시정 요청 여부 검토 ⑤ 예산 수입부의 연회비와 실적회비 간 배정 비율 검토 ⑥ 임시총회 등의 하반기 개최 검토 ⑦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⑧ 기타 논의

○ 2018. 6. 7. : 2018년도 제1차 법제교육 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선임(위원장 문정환)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부위원장 박상진, 간사 김재수) ③ 법제교육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④ 회규 제·개정 소위원회 구성 논의 ⑤ 공증업무 질의·회신 내용 검토 ⑥ 기타 논의

○ 2018. 6. 12. : 제2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회원

○ 2018. 6. 15. : 전자공증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알림 안내 / 회원

○ 2018. 6. 20. : 2018년도 제2차 국제위원회 개최 통지 / 국제위원회 위원

○ 2018. 7. 2. : 2018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중국공증인협회 주최 2018 CAAs 참석 등 제반 논의 ②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논의 ③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 ④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논의 ⑤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⑥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⑦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 논의 ⑧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회신 의견 검토 ⑨ 초청장 수수료 과다 징수를 이유로 한 징계의 타당성 검토 및 협회의 대응 방향 논의 ⑩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안)’ 건의 검토 ⑪ 공증업무 질의 및 회신 내용 검토 ⑫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⑬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안 논의 ⑭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⑮ 기타 논의

○ 2018. 7. 6. : 2018년도 제2차 국제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중국공증인협회 주최 2018 CAAs 회의 참가 등 관련 제반 논의 ② 비회원 자문위원(외국 변호사 등) 위촉 건의 관련 논의 ③ 공증 서식 중 영문 서식 개선 사항 논의 ④ 기타 논의

○ 2018. 7. 9.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제출 / 법원행정처

- 2018. 7. 9. : 질의(사단법인 총회 참석 인증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8. 7. 9. : 질의(전자문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8. 7. 9. : 질의(의사록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8. 7. 9. : 질의(총회 의사록 공증 관련) 회신 / 임명공증인 ○○○
- 2018. 7. 11. : 201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8. 7. 18.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인사 서한 이메일 발송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18. 7. 19. : 회원의 장부(증서원부) 분실에 따른 재인증 교부 보고 / 법무부
- 2018. 8. 13. : 2018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논의 ② 회의기구 이외 협회 대내외 업무 참석에 따른 출석수당 지급 논의 ③ 2018 CAAs 회의 주체발표자에 대한 지원 논의 ④ 상임이사 보선 및 직무 변경 논의 ⑤ 제12회 공증주간 설정 논의 ⑥ 제12회 공증주간 기념 유공 공증인 법무부장관 표창 대상자 선정 논의 ⑦ 2018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논의 ⑧ 인터넷에 공증 또는 공증대행 등의 키워드 광고 업체 등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 ⑨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에 대한 법무부 승인 요청 논의 ⑩ 실적회비 변경 책정 논의 ⑪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⑫기타 논의

- 2018. 8. 17. : 제12회 공증주간 설정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8. 8. 17. : 2018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교육장소 및 강사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8. 8. 23. : 공증 업무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법무부
- 2018. 8. 30. :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겸 제9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안내 / 이사회 구성원
- 2018. 8. 30. : 실적회비 변경 책정 관련 회원 의견 수렴 / 회원
- 2018. 8. 30. : 증인 결격사유 확인 시 주의 사항 안내 / 회원
- 2018. 9. 14. :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겸 제9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임이사 보선

(원안 의결) ②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③ 재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④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 (원안 의결) ⑤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⑥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승인 (원안 의결) ⑦ 실적회비 변경 책정안 승인 (원안 의결) ⑧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⑨ 공증실무 질의에 대한 답변 검토안 (상정 철회) ⑩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이사회 항목 금액 변경 승인안 (상정 철회) ⑪ 법무부에서 요청한 화상인증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위임 의결) ⑫기타

- 2018. 9. 19. : 대한공증인협회 임원 중 상임 이사 선임 통보 / 공증인 박중욱
- 2018. 9. 20. : 2018년도 공증 사무직원 교육 시행 및 참가 등록 안내 / 회원
- 2018. 9. 20. :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통지 / 회원
- 2018. 10. 5. :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통지 건에 대한 의견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8. 10. 13. :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② 재정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③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④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원안 의결) ⑤ 실적회비 변경 책정 승인 (원안 의결) ⑥ 기타

*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회의 자료집 및 의사록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서식 및 문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2018. 10. 15. : 유공 공증인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 법무부 회의실
- 2018. 10. 15. : 2018년도 제10차 상임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 공증담당변호사의 법제교육위원회 위원 참가 신청 논의 ②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이사회 항목 금액 변경 승인 ③ 공증실무 질의에 대한 답변 검토 ④ 가칭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지침(안)'건의 재검토 ⑤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의 법무부 승인 등을 위한 제반 대응 방향 논의 ⑥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⑦ 기타 논의

- 2018. 10. 19. : 대한공증인협회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결과 안내 및 보고 / 회원 및 법무부
 - ⑧ 사무국 직원 채용 논의 ⑨ (계속 논의 사항) 공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⑩ 기타 논의
- 2018. 10. 19.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법무부
- 2018. 10. 26. : 질의(확인서 및 합의각서의 수수료 산정기준 관련) 회신 / 임명공증인 ○○○
- 2018. 10. 26. : 질의(유언공정증서 정본의 수통부여 발급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18. 11. 1. : ‘(가칭) 장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의 승인 또는 지침 개정 건의 / 법무부
- 2018. 11. 1. : 질의 회신 / 민원인 ○○○○
- 2018. 11. 5. : 2018년도 제11차 상임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법한 공증 광고 행위 업체 대상 형사 고발을 위한 대리인 선임 ② 공증업무 질의 회신 재논의 ③ 장부 표지 디자인 변경 논의 ④ 2019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 논의 ⑤ 채권자의 특별송달신청에 대한 집행관의 거부처분 시정 요구 공문 발송 논의 ⑥ 공증 사무 프로그램 제작 논의 ⑦ 사무국 회무 관리 프로그램 제작 논의
- 2018. 11. 19.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50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8. 11. 21. : 2019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업무대행청
- 2018. 11. 21.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398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8. 11. 28. : 2018년도 제3차 국제위원회 개최 통지 / 국제위원회 위원
- 2018. 11. 29. : 외교부 여권과 이전 안내문 공증사무소 비치 협조 요청 안내 / 회원
- 2018. 11. 30. : 2019년도 장부 조제·인증 신청 안내 및 장부 표지 변경에 따른 혼용 사용 안내 / 회원
- 2018. 12. 3. : 2018년도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8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1호 원고료 책정·지급 논의 ② 정관 등 수수료에 관한 질의·회신 검토 ③ (밴드) 인도집행증서 집행문 수수료에 관한 질의회신

검토 ④ 공증업무 질의회신 재검토
요청 논의 ⑤ (밴드) 집행증서 작성
사무 지침상 쌍방대리행위 금지 규정
폐지 제도개선 건의 논의 ⑥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감
사 요청 논의 ⑦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 항목 금액 변경 추가 승인
⑧ 채권자의 특별송달신청에 대한
집행관의 거부처분 시정 요구 공문
발송 제반 논의 ⑨ (계속 논의사항) 공
증인 및 공증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⑩
기타 논의

○ 2018. 12. 4. : 2018년도 제3차 국제위원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9년도 UI
NL 정기총회 겸 제29차 국제공증인
대회 관련 논의 ② 기타 논의

○ 2018. 12. 21. : 2018년도 제13차 상임이
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양도담보부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실효 조건에 관
한 질의 회신 논의 ② 인증서 장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안)
논의 ③ (계속 논의사항) 공증인 및 공증
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④ 기타 논의

VI. 2018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공증인 정진용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18. 1. 1.
- 임 기 : 2022. 12. 31.까지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9, 402호
(동삭동, 훈영빌딩) ☎ 17849
- 전 화 : 031-651-7133
- 팩 스 : 031-651-7134
- 입회일 : 2018. 1. 2.

❖ 공증인 김수현 - 소속 서울북부지검

- 임명일 : 2018. 1. 1.
- 임 기 : 2022. 12. 31.까지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 201호
(공릉동, 대화빌딩) ☎ 01849
- 전 화 : 02-979-2201
- 팩 스 : 02-979-2202
- 입회일 : 2018. 1. 2.

❖ 공증인 윤동각 - 소속 창원지검

- 임명일 : 2018. 1. 1.
- 임 기 : 2022. 12. 31.까지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6-6,
4층 (신안동, 미성법조타운)
☎ 52676
- 전 화 : 055-752-9907

· 팩 스 : 055-753-2255

· 입회일 : 2018. 1. 2.

❖ 공증인 백정현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8. 2. 5.
- 임 기 : 2019. 12. 31.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16, 303호
(북창동, 우성빌딩) ☎ 04526
- 전 화 : 02-777-6926
- 팩 스 : 02-779-6926
- 입회일 : 2018. 2. 5.

❖ 공증인 정창환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 2018. 2. 5.
- 임 기 : 2018. 12. 31.까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3층 (거제동, 위너스빌딩)
☎ 47511
- 전 화 : 051-507-3331
- 팩 스 : 051-507-3332
- 입회일 : 2018. 2. 5.

❖ 공증인 소삼영 - 소속 대전지검

- 임명일 : 2017. 12. 11.
- 임 기 : 2022. 12. 10.까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107호 (청당동, 센타타워)
☎ 31198
- 전 화 : 041-568-0100
- 팩 스 : 041-568-0104
- 입회일 : 2018. 2. 12.

❖ 공증인 박종철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8. 2. 26.
- 임 기 : 2023. 2. 25.까지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2층 206-1호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 03150
- 전 화 : 02-739-5375
- 팩 스 : 02-739-5377
- 입회일 : 2018. 3. 13.

❖ 공증인 진형균 - 소속 춘천지검

- 임명일 : 2018. 4. 27.
- 임 기 : 2023. 4. 26.까지
- 소재지 :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1층
(효자동, 화남빌딩) ☎ 24372
- 전 화 : 033-241-1441
- 팩 스 : 033-241-1440
- 입회일 : 2018. 4. 30.

❖ 공증인 김양진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18. 4. 26.
- 임 기 : 2023. 4. 25.까지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왕지로 16, 2층
(왕지동, 산성빌딩) ☎ 57932
- 전 화 : 061-725-8448
- 팩 스 : 061-721-8448
- 입회일 : 2018. 5. 25.

❖ 공증인 김학성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8. 7. 2.
- 임 기 : 2023. 7. 1.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802호 (충무로2가, 신일빌딩) ☎ 04537
- 전 화 : 02-779-5581
- 팩 스 : 02-779-5584
- 입회일 : 2018. 7. 2.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이용복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1, 1층
(서소문동, 삼령빌딩)
- 탈회일 : 2018. 1. 2. 인가취소 및 해산

❖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최영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16, 303호
(북창동, 우성빌딩)
- 탈회일 : 2018. 2. 5. 인가취소 및 해산

❖ 공증인가 삼일(3·1)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부산지검
- 대 표 : 정창환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3층 (거제동, 위너스빌딩)
- 탈회일 : 2018. 2. 5. 인가취소 및 해산

❖ 공증인 김훈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802호
(충무로2가, 신일빌딩)
- 탈퇴일 : 2018. 6. 30. 임기만료(정년)

❖ 공증인 박경태

- 소 속 : 광주지검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왕지로 16, 2층
(왕지동, 산성빌딩)
- 탈퇴일 : 2018. 6. 30. 임기만료(정년)

❖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정주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4, 801호
(청진동, 삼송빌딩)
- 탈퇴일 : 2018. 10. 18. 법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해산

❖ 공증인 한기봉

- 소 속 : 인천지검
- 소재지 :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5, 202호
(구월동, 인텍스빌딩)
- 탈퇴일 : 2018. 12. 28. 의원면직

❖ 공증인 현영두

- 소 속 : 제주지검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남광복5길 6, 2층
(이도2동, 현곡빌딩)
- 탈퇴일 : 2018. 12. 31. 임기만료(정년)

❖ 공증인 정창환

- 소 속 : 부산지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3층 (거제동, 위너스빌딩)
- 탈퇴일 : 2018. 12. 31. 임기만료(정년)

❖ 공증인 심일동

- 소 속 : 서울서부지검
- 사무소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2, 20
1호 (공덕동, 삼문빌딩)
- 탈퇴일 : 2018. 12. 31. 의원면직

❖ 공증인 유정주

- 소 속 : 서울서부지검
- 사무소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2, 20
1호 (공덕동, 삼문빌딩)
- 탈퇴일 : 2018. 12. 31. 의원면직

3. 공증사무소 이전

❖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송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2층 (서초동, 훈민타워)
(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7층 (서초동, 모인터빌딩)
- 이전일 : 2017. 12. 26.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602호~603호
(서현동, 서현하우비)
(구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608호
(서현동, 보람코아빌딩)
- 이전일 : 2018. 2. 13.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5층 (역삼동, 상경빌딩)
(구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
길 7, 3층 (역삼동, 역삼P빌딩)
- 이전일 : 2018. 4. 2.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 소 속 : 인천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인천 남구 소성로 171,
301호 (학익동, 평창빌딩)
(구 주소) 인천 남구 소성로 171,
202호 (학익동, 평창빌딩)
- 이전일 : 2018. 6. 18.

❖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4호 (범어동, 범어타워)

(구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3층 (범어동, 태성빌딩)

- 이전일 : 2018. 10. 30.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202호
(서초동, 외교센터빌딩)
(구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
8, 4층 (청진동, 진학회관)
- 이전일 : 2018. 12. 17.

❖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01호
내지 703호, 107호
(하동, 유성법조프라자)
(구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5, 301호~306호·
203호 (원천동, 전원빌딩)
- 이전일 : 2018. 12. 24.

공증과신뢰 (2019 통권 제12호)

발행일 2022년 8월 31일
발행인 남 상 우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4, 4층 401호
(서초동, 서일빌딩)
전화 : (02)3477-5007
팩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후디자인
편집 전화 : (02)2016-9044
전자우편 : hood6@naver.com

Notary and Public Faith (Vol. 12. 2019)

Published August 31. 2022
Publisher NAM Sang-Wo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Seocho-dong, Seo-il Building)
#401, 104,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 of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

